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9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임오경·윤후덕·정청래

김홍걸 • 박성준 • 서삼석

장철민 • 유정주 • 김영주

김진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'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·중·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 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.

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,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 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단서 중 "방송·통신수업"을 "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그 밖에"를 "원격수업 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의 운영, 그 밖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수업 등) ① (생 략)	제24조(수업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수업은 주간(晝間) • 전일제	②
(全日制)를 원칙으로 한다. 다	
만,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야간수업 · 계절수업	
·시간제수업 또는 <u>방송·통신</u>	<u>방송·통신</u>
<u>수업</u> 등을 할 수 있다.	•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
③ 학교의 학기・수업일수・학	3
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	
운영, <u>그 밖에</u> 수업에 필요한	<u>원</u> 격수업의 수업일수 등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원격수업의 운영, 그 밖에